

#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99-24

제출년월일 : 1999. 4.  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 권리의무의 승계를 배수설비로만 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현행은 배수설비 외에 사용료 등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하도록 되었던 것을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제외하고 배수설비만을 한정하려는 것임.

## 3. 참고사항

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27조

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 제22조

##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배수설비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2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하수</p> <p>·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게 발생한 권리·의무를 승계한 다. 다만, 제30조의 규정에 의하 여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27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배수</p> <p>설비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 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</p>			